제952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경찰청)	1.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의 금지 의무 신설(신설) ○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안 제30조의9제3항)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장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보험 계약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 ○ 보험금지급 청구권 처분 제한 규정 신설(안 제30조의9제4항) – 교육 중 사고피해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처분(양도 · 압류 · 담보제공) 제한 규정 신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9	1.비중요
2	세무사법 개정안 (기획재정부)	1.세무사의 광고(신설) ○ 세무사,세무법인에 허용되는 광고매체 · 내용 및 허위 · 과장 광고 금지 등 규정을 신설 – 1. 세무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 –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표방 –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4.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 - 5.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 -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 품위 훼손 우려 - 7. 그 밖에 세무사의 공공성 등을 해치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세무사법 제12조의7	
3	관세사법 개정안 (기획재정부)	1.관세사의 탈세 상담 등 금지 및 제재처분(신설) ○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에 대해 관세사나 직무보조자가 가담·방조·상담하는 것을 금지 ○ 금지의무 위반시,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록 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 정지 처분 ▶관세사법 제13조의7,제18조제20조	1.비중요
4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기준(강화) ○ 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최소인원을 증원하고 정밀안전검사를 위해 열화상카메라, 진동분석장비, 와이어로프비파괴검사장비 등을 설비기준에 추가함 ·검사책임자 배치기준: 기계·전기·전자분야 1명→기계·전기·전자·건축·토목분야 2명 ·검사장비 보유기준: 열화상카메라, 진동장비, 와이어로프테스터기 등 장비 추가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8조 2.궤도운송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신설) ㅇ 부상자에 대한 기준을 24시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로 구체화하고, 사고발생 시 지체없이 유선으로, 72시간 내에 사고보고서 서식에 의한 보고로 명시 ㅇ 사고조사를 국토부장관도 가능하도록 하고, 사고조사 권한을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2조 3.운행장애의 범위(신설) ㅇ 운행장애를 운행 중 5분 이상 운행이 지연되는 “운행지연”과 구동부의 고장, 차량역주행 등 “주요장애”로 규정함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조의2	
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기준 등 마련(신설) ㅇ (원자로조종면허 취득·갱신 신청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만족하여 원자로의 운전에 적합한 신체를 갖추고 있음을 신체검사 의료기관으로부터 판정받도록 함 ㅇ (원자로 운영자) 원자로의 운전업무 및 그 외 원자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로조종면허를 요건으로 하는 업무 등(이하 "원자로의 운전업무 등") 종사자에게 신체적 결함이 발생한 경우 또는 종사자가 신체검사 조건부적합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관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제116조의3,제116조의4,제116조의5,제116조의6,제116조의7	
6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1.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신설) ○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제한 - (대상요건) ▵전통 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중인 학교, 문화예술교육시설·교육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관련 공공기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2.품질표시 대상 및 기준 등(신설) ○ 품질표시 대상 품목 지정기준 및 품질표시 방법 규정 - (품목 지정기준) ▵고품질 전통문화 상품 생산 유도 ▵전통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 - (품질표시 내용) 생산자, 재료의 원산지 및 제조 방법 등이 포함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표시방법) 상품 및 상품포장 등에 부착 또는 인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 3.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신설) ㅇ 전통문화산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제한 – (지정대상) 전통문화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 (조직인력)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2년이상 종사경력) 10명 이상 확보 – (시설요건) 사무실과 기자재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	
7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1.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제출서류(신설) ㅇ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운영사항 점검 등 – (신청제출서류) ▵교육인력·시설·설비의 확보현황 ▵교육과정 운영계획서·평가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8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건복지부)	1.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신설) ㅇ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에 대한 내용 신설(제1항) – 병원·종합병원에서 2년 이상 임상 경력 보유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매 3년) ㅇ 각종 병원급 유형과 병상수를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수(제2항)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 교육전담간호사 2명을 두되, 필요한 경우 300병상 초과하는 250병상마다 1명 추가 –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기타 병원급 의료기관 :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른 인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9	1.비중요
9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소방청)	1.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신설) ㅇ 송수구의 구조 · 재료의 성능 및 접합부 규격을 규정하고, 내압력 · 본체강도 시험 등 기준을 신설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체	1.비중요
10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소방청)	1.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신설) ㅇ 유량측정장치의 구조 · 재료 성능을 규정하고, 내압 · 본체강도 · 부식시험 등 기준을 신설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체	1.비중요